

IMO 제85차 해사안전위원회(MSC)

참석결과 보고

I.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85차 해사안전위원회
(Committee on Marine Safety,
85th session)
- 기간/장소 : 08. 11. 26~12. 5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참 석 자 : 안전기획팀 최기중 선임검사원

II. 의제목차

1. [의제 4]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2. [의제 5]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 기준
3. [의제 6] LRIT 관련 사항
4. [의제 18]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 행위

III. 의제별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4 해상보안강화를 위한 조치

1. 의제 개요

- 「항만시설보안감사 지침」개발 및 「해상보안 관련 표준법률」 개발의 필요성 검토 등 MSC 84 미결정 사항 추가검토를 위해 MSC 85에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요청함
- 통신 작업반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SOLAS XI-2장 및 ISPS Code 비적용 선박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침서 회람(Circular) 초안 마련

- COMSAR 12에서 논의된 「선박 항만 보안 및 해상안전시스템 강화 지원에 적합한 스펙트럼 및 잠재 주파수」 관련 적절한 의견을 MSC 85에 제출토록 요청함
- 보안관련 결함사항 식별 후 결함수정에 추가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 및 보안 사항의 충돌시 해결책에 관한 적절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를 위하여 「SOLAS XI-2장 및 ISPS Code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MSC/Circ.1097)」의 개정 필요성 검토를 요청함
- 상기 각 의제별로 본회의장 토의 및 다음과 같이 작업반을 결성하여 검토 후 본회의장에서 최종 결정함

〈작업반 구성 : 해상보안(WG 2)〉

- 의 장 : Mr. J. Parkinson (호주)
- 기 간 : 2008. 11. 27~12. 3 (5일간)
- 참 가 : 아국 포함 54개 회원국 및 2개 정부간 기구, 12개 비정부간 기구 참석

2. 주요 쟁점별 MSC 85 회의 논의 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 항만시설 보안감사
 - 지난 회기 캐나다에서 제기한 「항만시설 보안감사에 관한 지침서」 개발의 필요성(MSC 84/4/3) 검토
 - 각 국은 자발적으로(비강제) 자국항만의 SOLAS XI-2장 및 ISPS Code 이행사항 평가의 필요성 공감
 - 「항만시설 보안감사에 관한 지침서」 개발 관련 제출의제가 없어 추가논의 곤란

- 향후 「SOLAS 협약당사국 및 항만시설의 자발적 자체평가 지침(MSC/Circ.1192)」 및 「SOLAS XI-2장 및 ISPS Code의 효율적 이행(MSC/Circ.1194)」 적용 중 경험을 MSC에 제출, 정보사항 공유하도록 권고
 - 「해상보안 관련 표준법률」 개발
 - ITCP(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의 필요성 평가 및 UN 안보리 현장조사 결과 SOLAS XI-2장 및 ISPS Code 이행 관련 국내법이 없거나 부적절한 국가가 다수 존재함
 - 표준법률 개발 촉진을 위하여 SOLAS 협약 제3조 의거 관련 자국 법률 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작업반 논의결과 효율적 표준법률 개발을 위해서 통신 작업반 구성보다는 사무국에서 소수 법률 전문가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함
 - ISPS 심사 중 발견된 결함 사항의 처리
 - IACS(국제선급협회)에서 제기한 「SOLAS XI-2장 및 ISPS Code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MSC/Circ.1097)」의 개정 필요성 검토
 - ISPS(국제 선박 항만 보안) 심사 관련 부적합 사항 식별 후 처리 관련 근본원인 해소가 중요하며, 선박보안 관련 ISM과 같은 총체적 품질 관리시스템 적용 필요
 - 일부 국가에서는 결함의 처리에 대해 ISPS Code에 불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동 Code의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 제기함
 - 각 국에 차기 회의(MSC 86)시 관련문서 제출 요청
 - SOLAS XI-2장 및 ISPS Code 비적용 선박의 보안강화
 - 지난 MSC 82차에서 구성된 통신작업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작업반에서 논의 후 「SOLAS XI-2장 및 ISPS Code 비적용 선박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침서」 회람(Circular)을 최종 승인함
 - 동 지침은 각 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비강제 지침임을 확인하고, 정부 및 Non-SOLAS 선박을 관리하는 관련당국을 위한 지침과 선박 운전자 등을 위한 지침으로 구분하여 작성
 -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레저선박을 위한 지침」 및 「마리나 및 항만 기관을 위한 지침」에 대하여 유보의사 표명
 - 선박 항만 보안 및 해상안전시스템 강화 지원에 적합한 스펙트럼 및 잠재 주파수
 - ITU WRC-11에 제출될 동 의제 관련 IMO 차원의 정책방향에 대한 결정사항을 요청함
 - 그러나, MSC 85는 이러한 요청에 대한 검토를 위한 충분한 검토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COMSAR 13('09. 1월)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함
- ### 3. 후속 조치사항
- 이번 회기 중 논의된 해상보안 강화 관련 주요 결정사항 및 향후 동향 지속 파악, 관련 정책 수립시 적극반영
 - 위원회에서는 표준법률 개발 촉진을 위하여 SOLAS 협약 제3조 의거 관련 자국 법률 규정 등을 제출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번에 채택된 회람(Circular) 「SOLAS XI-2장 및 ISPS Code 비적용 선박의 보안강화를 위한 지침서」 관련, 국내 소형선박(어선, 레저선박 등) 보안 위협요소 현황 파악 및 본 지침서의 적용 가능성 검토 등 후속 대책 마련

의제 5	목표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 기준
------	-------------------------------

1. 의제 개요

- MSC 85차에서는 그동안 개발되어온 “결정론적 방법론(deterministic approach)에 기반을 둔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를 완성 및 승인하고 이를 강제화 하기 위한 SOLAS 개정안의 승인작업이 주요 작업임. 금번 회의의 제출된 문서는 Pilot Panel의 GBS Tier III (검증절차)에 대한 IACS CSR을 이용한 2차 시험 적용결과 보고서와 GBS를 강제화하기 위한 SOLAS 개정안 문서가 주 작업문서이고 나머지로 제출된 문서(6개)는 두 문서에 대한 제안 및 코멘트 문서임. 따라서 MSC 85에서는 제안된 코멘트를 반영하여 SOLAS 개정안 완성, GBS Tier II (기능요건의 개정사항) 및 Tier III (검증절차 Part A and B)를 완성하는 작업임

2. 주요 논의 경과

[GBS(신개념 선박구조기준)의 구조]

- 5단계로 구성된 구조에서 IMO의 GBS는 1단계에서 3단계를 말함
 - Tier I : 목표(Goal)
 - Tier II : 기능요건(Functional Requirements)
 - Tier III : 검증절차 및 허용기준(Verification of Compliance Criteria)
 - Tier IV : 선급규칙 및 정부 안전규정
 - Tier V : 산업체 안전기준 등

[GBS 작업]

- 2004년(MSC 78)부터 개발되어온 GBS는 2007년까지 아래와 같이 두 분야의 GBS 작업으로 진행되어 왔음
 - (1) 결정론적 방법(Deterministic Approach)을 기반으로 한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 작업

- (2) 안전수준접근방법(SLA, Safety Level Approach)을 기반으로 한 전 선종 및 선박의 전 분야에 적용할 GBS 작업

[MSC 84 주요결정사항]

-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 작업
 - MSC 85차에서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을 위한 GBS를 완성 및 승인하고, 이를 강제화 하기 위한 SOLAS 개정안에 대한 승인 작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음
- 포괄적(Generic) GBS 작업
 - GBS의 두 가지 접근방식(결정론적 접근법과 안전수준접근법)을 통합한 포괄적 GBS를 개발하기 위한 장단기 작업계획을 수립
 - (1) 단기계획(MSC 86차) : 포괄적 GBS 지침서 완성 및 안전수준접근법 적용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계획 개발
 - (2) 장기계획(MSC 86차 이후)
 - ① 안전수준접근법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결정론적 방법에서 얻은 결과와 비교
 - ② GBS 적용을 다른 선종으로 확대
 - ③ 신조선박의 설계와 건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GBS로 확장 검토

3. 주요 쟁점별 MSC 85 회의 논의 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Pilot Panel 보고서(3단계 검증절차 완성)]

□ 관련문서

- MSC 85/5/1 - Tier III 검증절차의 2차 시험 적용 결과에 대한 PP 보고서(Pilot Panel)
- MSC 85/5/2 - 검증절차의 GoE의 기밀성명 (사무국)
- MSC 85/5/6 - 순치수 산정 개념에 대한 코멘트 (일본)
- MSC 84/5/7 - 지적재산권(IPR)의 보호에 대한 고려 (일본/CESA)

- MSC 85/5/8 - 검증절차 및 순치수 산정 정의에 대한 코멘트 (아국)
- 주요 결정사항
 - 검증절차 A편(Verification process)
 - 규칙 검증 요청자로서 IMO 회원국 (Contracting Government) 또는 기국 (Administration)으로 할지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함
“GBS에 따르는지 검증을 요청하는 RO를 규칙 제출자(Submitter)로 하며, 검증절차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 관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추천서(Supporting letter)와 함께 검증 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일본의 제안사항(MSC85/5/4)에서 제안된 Coverage of the RO requirements에 대한 다음 세 가지 Option 사항에 대한 논의
옵션 1 : RO가 커버하지 못하는 규칙은 관련된 국가 표준으로 보완
옵션 2 : RO가 커버하지 못하는 규칙은 RO가 보완
옵션 3 : 대부분의 RO가 커버하지 못하는 Tier 2 요건 일부를 무효화하는데 MSC가 동의
· 작업반은 RO가 제출한 규칙에 커버되지 않는 기능요건의 적용범위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하였고, 작업반의 대다수는 RO가 모든 기능요건에 대처하는 문서꾸러미를 제출할 것에 동의하였음
 - 재심 위원회(Appeal Board)의 구성은 3명 또는 5명으로 정하였음
 - 재심 청구(Appeal):
 - 규칙제출자는 GoE의 최종 보고서를 받은 이후 30일 내에 주관청을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재심 청구와 함께 재 검증자료를 6개월 내에 제출 하도록 함
 - 검증 유지(Maintenance of Verification): 아래에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하였음
 - 중간 검증 절차(매 1년): RO는 최소한 매년 규칙 개정 통보를 주관청 및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주관청은 RO의 규칙 개정사항이 GBS 요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 경우 사무총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함
 - 정기 검증절차(매 5년): RO는 지난 5년 동안 개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주관청을 통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GoE를 구성하여 규칙의 검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전문가 그룹(Group of Experts):
 - GoE의 위원수는 사안(최초검증 또는 검증 유지, 제출된 규칙의 복잡성 등)에 따라서 변경하되, PP인인 최대 11명의 전문가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7~9명으로 하기로 함
 - GoE의 임기제한(3년)은 자원(resource)과 관련하여 너무 제한적이므로 삭제하기로 함
 - 의사결정방식(Group of Experts): PP가 제안한 2가지 안(다수결 및 2/3)에 새로 추가한 60:40을 포함한 3가지 의사결정방식 (Simple, two-thirds majority, 60:40)에 대하여 각국의 의견이 분분하여 의장은 거수로 선호도를 조사하고 다수 의견인 “two-thirds majority”로 결정함
 - 사무총장에게 GoE를 추천 하는 단체는 정부(Administration) 및 또는 비정부 기구로 하기로 함
 - 사무총장이 GoE를 지명하는 것에 대해 일부 국가가 우려를 표명하고, 아래와 같은

- 추가요건을 제안하였으나 지지를 얻지 못하여 반영되지 못함.
- “[주관청은 사무총장의 GoE의 선발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 GoE 후보자 자격 요건은 구조신뢰성 (Structural Reliability)을 추가하고, 선박 건조 및 선박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으로 규정토록 함
- GoE의 기밀성명(Confidentiality statement) 원활한 GBS 작업진행을 위해 사무국이 제출한(MSC 85/5/2) 기밀설명의 2가지 예에 대하여 논의되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부록 2안을 선호함
- 검증절차 B편(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and evaluation criteria)
 - “Rules” 정의: RO 뿐만 아니고 모든 정부를 포함한 모든 피검증자(Rule submitters)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전절에 규정하는 “Rules”의 정의와 일관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함
 - “5. The “Rules”, as referred in this part, include the published rule set, guidelines, interpretations, internal procedures, etc.
 - PP가 IACS Rec. No.34는 산업표준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OCIMF는 우려를 표명하고 기구가 Ⅲ.2의 환경기준에 기초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를 제안하였지만 대다수는 이를 반대함
 - Ⅲ.9 인적 요소(Human element considerations): 독일은 동 규정이 ILO 관련내용이므로 모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그리스, 바하마 등은 설계 및 구조뿐만 아니라 인적인

- 전 문제를 고려할 때 유지를 주장하였으며 의장은 이를 수용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함
- Ⅲ.10 설계 투명성(design transparency)
 - 작업반의 대다수는 일본과 CESA가 공동으로 제출한 문서의 제안사항과 관련 IPR 고려하는 문구를 관련 “Statement intent”에 만 반영하며 나머지에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CSEA는 이 결정에 반대를 표하고 GBS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함을 주장함
 - Part B를 마무리하기 위해 10.2.1.1~10.2.1.7을 SCF 작업동일 미결사항(...)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함
 - Ⅲ.10.2.3, 10.2.4 및 10.2.5 항목은 설계 및 건조과정에서 교신된 기술 자료를 선주 및 기국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사항이나 법적인 문제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들을 통합하여 수정하기로 함

[SOLAS 개정안]

관련문서

- MSC 85/5 -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대한 GBS를 강제화하기 위한 SOLAS 개정안 (사무국)
- MSC 84/5/4 - SOLAS 개정안에 대한 코멘트 및 제안 (일본)
- MSC 84/5/5 - 선박건조파일(SCF)의 지적재산권(IPR) 보호 (CESA)
- MSC 84/5/7 - 지적재산권(IPR)의 보호에 대한 고려 (일본/CESA)
- MSC 84/5/8 - 선박건조파일(SCF)의 지적재산권 코멘트 (한국)

주요 결정사항

- SOLAS 개정안(Annex 1)
 - 산적화물선의 정의:
 - 일부국가는 CSR과 일치될 위해 광석운반

- 선(Ore carrier)과 복합운반선(Combination Carrier)을 산적화물선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제안하였음. 이 제안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이 대등하여 표결에 부쳤고 이들 선박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추가하여 화물구역 내에 단일 갑판, 톱사이드 탱크 및 호퍼탱크 가진 구조로 건조된 선박으로 제한함
- 산적화물선의 길이 [90m or 150m]
 - 일부국가는 GBS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현 CSR(Bulk Carriers)에서 적용하고 있는 90m를 제안하였으나, 150m를 지지하는 쪽이 다소 우세하여 150m로 결정하였음.
 - SOLAS 적용일:
 - 일본(MSC 85/5/4)은 GBS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SOLAS 시행일과 GBS 적용일 사이에 3년의 기간을 주는 아래의 구체적인 일정을 제안하였고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지지하여 GBS 적용일을 최종 결정함
 - (1) 2015년 1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되는 선박
 - (2) 건조계약일이 없는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용골거치일 또는 동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 (3) 2019년 1월 1일 이후 인도되는 선박
 - 상기 기간은 반드시 시행전 검토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결의안에 2012년 GBS의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적용일을 조정한다는 규정을 결의안에 포함시킴
 - 일부 국가는 현 CSR이 이미 준비가 되었으므로 2012년 1월 1일로 제안하였으나, IACS는 현 CSR이 GBS 기능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여 이 제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
 - 선박건조파일(SCF):
 - 지적재산권보호, 등록의 최신화, 보관 및 주관청과 RO의 자료사용(Availability)에 관한 문제를 SCF에 포함될 자료에 관한 지침서에 넣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SOLAS 개정안에는 넣지 않기로 함
 - CESA는 SCF 자료를 본선 및 선주사에 보관하는 것에 반대하고 RO 또는 주관청에 보관할 것을 제안함(MSC 85/5/5)
 - 대다수의 국가는 CESA의 제안에 반대하여 SCF 자료를 본선에 비치하기로 결정하였음. 일부 국가는 추가하여 SCF 문서에 대해 선박의 운항과 보수유지에 필요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대한 국제 목적기반 선박건조기준(Tier II 기능요건)
- 최종강도(Ultimate Strength):
 - 한국은 현실적인 적용을 위하여 최종강도 정의에 “Hull girder”를 추가 하여 최종강도 범위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일부 국가의 제안으로 아래와 같이 보완됨

“..... Ultimate strength calculations should include ultimate hull girder capacity and related ultimate strength of plates and stiffeners,”
 - 순치수 산정(Net scantlings):
 - PP가 제안한 순치수 산정 재정의(“Hull girder global strength”)에 대하여 일본은 선체의 전체강도(Global stress/strength)로 표현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은 일차 지지부재(Primary support members)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러나 작업반의 대다수는 아래와 같은 수정안으로 결정함

“..... fatigue and global strength of hull girder and primary supporting structures,.....”

[본회의 결정사항]

주요 결정사항

- SOLAS 개정안 및 국제 목적기반 선박건조기준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토론하였음. 그리스, 바하마, 파나마, 일본, ICS 등은 현재 안으로 승인하기에 충분하며, 향후 MSC 86차에서 채택을 위해 반드시 승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반면 몰타, 이태리,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등은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미결사항이 많고 규칙검증에 필요한 재원 문제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승인을 적극 반대하였음. 이에 의장은 MSC 86차에서 승인을 결정하기로 함
- SCF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 대한 지침서와 검증절차에 관한 재원확보 문제가 작업반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결정하지 못하였음을 보고함. 이에 관해 작업반 의장은 관련 작업문서를 작성하여 향후 MSC 86차에 제출하기로 함
- 스웨덴이 작업반에서 지적했던 규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위해 검증에 관한 자체평가에 기반을 둔 대체검증계획에 대해 그 상세제안이 제출되지 못하여 대체검증계획을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였음을 보고함
- 다른 IMO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작업은 시간이 부족하여 작업반에서 논의되지 못하였음을 보고함
- 검증절차에 대한 재원 및 SCF 규정 등에 대한 미결로 MSC 86차에서 재논의 되어야 함에 따라 MSC 86차의 일정이 재조정되어야 함을 보고하고 이를 수락함
- 회원국 및 국제기구는 아래의 세 가지 미결사항에 대해서 제안 문서를 MSC 86차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 검증절차 A편의 완성
 - 선박건조과일(SCF)에 포함될 자료에 대한

지침서 완성

- 자체평가에 기초한 대체검증절차의 개발

4. 대표단 주요 활동사항

○ 한중일 사전 회의

- 일시 및 장소 : IMO 본부 회의실, 2008년 11월 26일 11:00~11:30
- 참석자 : 한국 대표(김창균 IMO 연락관, 김영소 서기관외 4명), 일본 및 중국 대표
- 회의 내용 : 공동 의제사항 논의 및 상호지지 협의 한국, 일본, 중국은 GBS의제 관련하여 별도의 모임을 갖고 SOLAS 개정안 적용일, 순치수 산정, 산적화물선 적용길이 및 IPR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SCF 특별작업반(Informal Small Working Group)

- 의 장 : IACS의 Gary Horn(ABS 선급)
- 참석자 : 한국, 일본, 그리스, 스페인 ICS, 독일 등 각국 대표 약 40명
- 일 시 : 2008. 12. 3. 9:30~13:00
- 작업내용: 선박건조 파일(SCF)에 포함될 자료에 대한 지침 작업

(1) 지침 3절 자료(Information)의 정의에 대하여 논의

(2) SCF 상세자료 표에 대한 보안작업을 함

- 제출될 자료항목의 명칭수정 및 구체적 자료 제시
- 각 항목별 제출 Sample 예시(가정된 요건에 대한 계산결과 Summary 등)

(3) SCF 자료 분류 및 선정, IPR 적용방안 등의 문제는 단시간에 결정될 문제가 아님으로 다음 MSC에서 작업할 것을 제안함

5. 후속조치사항

미결사항에 대한 작업

- 검증절차 지침, 선박건조과일(SCF) 규정 및 검증절차를 위한 재원 등의 사안에 대하여

MSC 86차에 완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세밀히 분석하고 MSC 86차 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SCF 포함될 자료에 대한 지침작업과 관련 국제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조선강국인 아국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공통규칙(CSR)의 보완작업

- 150m 이상의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에 대한 GBS 적용일이 2015년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음
- RO의 규칙은 GBS의 기능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RO는 모든 기능요건에 대처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결정되었음
- 따라서 현재 선급의 공통규칙은 GBS의 기능요건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므로 부족한 요건에 대하여 GBS 시행일을 고려 규칙보완작업을 서둘러 착수하여야 할 것임

포괄적인 GBS 프레임워크 개발(MSC 86)

- MSC 86차 회의 이후에 본격화될 포괄적인 GBS의 개발에 적극참여하고 주도하기 위해 사전연구 및 기술문서를 통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필요
- 특히, 포괄적인 GBS가 우리나라가 지지하고 있는 SLA기반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정론적 방법론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SLA 기반 GBS의 필요성 (합리성, 우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료의 확보가 요구됨

의제 6 LRIT 관련 사항

1. 의제 개요

- 09. 1. 1, LRIT제도의 적기 이행을 위해 특별작업반에서 검토한 LRIT 기술사양 및 스키마 개정안을 승인하고, 작성한 LRIT 테스트 프로토

콜 및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승인하고, IMSO의 LRIT Coordinator로 수행하는 서비스비용에 관한 개정안을 검토함

- MSC 85/6/1 - 제4차 LRIT특별작업반 보고서(사무국)
- MSC 85/6/1/Add.1 - 제5차 LRIT 특별작업반 보고서(사무국)
- MSC 85/6/1/Add.2 - 제6차 LRIT 특별작업반 보고서(사무국)
- MSC 85/6/2 - LRIT Coordinator 관련 성능기준 개정 제안(IMSO)
- MSC 85/INF.7 - LRIT 시스템 검토 및 감사수행(IMSO)

2. 주요 논의 경과

- MSC 202(81) : SOLAS 개정안 채택
- MSC 210(81) : LRIT 성능기준 및 기능요건 채택
- MSC.1/Circ.1219 : LRIT 임시 기술사양 승인
- MSC(82) LRIT Coordinator로서 IMSO 선정
- MSC 242(83) : LRIT정보 이용범위 확대(항해 안전및환경보호) 결의서 채택
- MSC 243(83) : 미국의 임시 IDE 설치 결의서 채택
- MSC.263(84) : LRIT 성능기준 및 기능 요건 (개정) 승인
- MSC.264(84) : 임시 IDE 설치 결의서 개정 승인
- MSC.1/Circ.1256 : LRIT 제도 이행 지침 채택
- MSC.1/Circ.1257 : LRIT 선박 적합성 테스트 실시 및 인증 지침 채택
- MSC.1/Circ.1258 : LRIT 정보 요청 및 수신에 관한 수색구조 지침 채택
- MSC.1/Circ.1259 : 임시 LRIT 기술 사양(개정) 채택(공식적인 문서 미 발행)
- IDE, IDC 및 LRIT 시스템내 통신에 관한 기술사양 개정안 승인

- DDP에 관한 기술사양 개정안 승인
 - 선박설비의 LRIT정보 송신요건 적합성 검사 및 증명서교부에 관한 지침을 승인
 - 제1차~제6차 특별작업반(Ad hoc WG) 운영
 - LRIT 성능기준, 기술사양 및 XML 스키마에 대한 개정사항을 논의
 - LRIT 테스트 프로토콜 및 테스트 체크리스트 작성을 논의
 - LRIT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 DDP(LRIT Data Distribution Plan) 서버 구축 완료
 - IDE 구축 완료
 - 8개 DC 구축 완료
3. 주요 쟁점별 MSC 85차 회의 논의 경과 및 주요 결정사항

[특별작업반 결과보고서 승인]

논의경과

가. 본회의장(Plenary) 논의 경과

- LRIT 시스템 구축 및 이행 현황 확인
 - 임시 IDE, DDP서버, 7개 DC구축 및 테스트 완료
 - 158개 회원국 중 54개국이 DC 구축 계획 제출
 - ※ DDP 관련 상세 정보를 제출한 국가는 소수
- 기술사양 개정안, DC 테스트 프로토콜과 임시중단의 인식, 보고 및 기록절차 등 승인
- DDP에 포함되어 있는 각국의 지리적 polygon의 유효성 체크
 - DDP 서버에서 각국의 지리적 polygon의 유효성 점검요청(사이프러스, 터키)
 - 각국의 지리적 polygon의 유효성을 DDP 서버에서 체크하기 위해서는 GIS tool이 필요하고, 시간 및 비용문제가 제기됨(사무국)
 - 각 DC에서 DDP를 다운 받은 후에 각국의 지리적 polygon의 유효성을 체크하는 경우

에는 이를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침 필요

☞ 의장은 작업반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 개도국의 NDC 구축에 관한 기술적 지원 필요(남아프리카, 인도, 중국)

☞ 의장은 작업반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 MSC.1/Circ.1259, 임시 LRIT 기술 사양(개정) 문서, 발행 지연 문제

☞ 의장은 작업반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나. 작업반(WG) 논의경과

- LRIT 시스템관련 모든 기술사양에 관한 내용 통합(MSC.1/Circ.1259)

- 1부 : 규정 V/19-1, LRIT 성능기준, LRIT 기술사양(IDC, IDE, DDP, LRIT 구성요소 간 통신), XML Schemas, IDC 및 IDE 위치 기준

- 2부 :

부속서 1 : 프로토타입, 개발, 통합 및 수정 테스트 단계를 위한 Protocol 및 arrangement

부속서 2 : LRIT 시스템의 일시적 운영 중지를 위한 공지, 보고 및 기록에 관한 절차

부속서 3 : LRIT 기술사양, 스키마, 테스트 절차 및 테스트 항목 개정을 위한 절차

- LRIT 시스템 이행에 관한 지침 및 권고 회람 문서 재 발행

- LRIT 이행에 관한 지침서(MSC.1/Circ.1256) 개정 → MSC.1/ Circ.[xxxx]

- LRIT 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한 과도기간 협정 신설 → MSC.1/Circ.[xxxx]

- LRIT 선박설비의 적합성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지침서(MSC.1/Circ.1257) 개정 → MSC.1/Circ.[xxxx]

- LRIT 제도 적용 제외 대상 선종에 관한 지침 신설 → MSC.1/Circ.[xxxx]
-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위한 지침서(MSC.1/Circ.1258) 개정 → MSC.1/Circ.[xxxx]
- MSC 85 및 86차사이의 기술사양 개정절차 수립
 - 3단계 절차(통신작업반, 위원회 지정 패널, 특별작업반의 검토 및 채택)에 대하여 논의
 - 절차의 복잡성 및 패널 및 통신작업반의 전문가의 중복되므로 2단계 절차안으로 합의
 - 개정안 채택 : 만장일치제(의견 미제출시 동의로 간주)
 - ※ MSC 85차 및 86차사이 회기간 특별작업반회의는 1회정도 개최예정
- 통합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자구수정
 - 의견 없었음
- Polygon의 유효성 확인
 - 기술적으로 부정확한 polygon을 DDP 서버에 올리는 것은 LRIT 시스템에 문제 초래 가능(캐나다)
 - DDP 서버에서 Polygon 체크할 것을 제안했고, 사무국은 예산 및 기술 구현에 장기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함. IMSO가 감사를 위해 S/W 구축 예정임. IMSO의 S/W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의장은 차기 특별작업반 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함(각국이 방안을 제시)
- 주요 결정사항
 - 위원회는 LRIT 시스템관련 모든 기술사양 내용을 통한 임시 LRIT 기술사양 회람문서 승인함(MSC.1/Circ.1259)
 - 위원회는 LRIT 시스템 이행에 관한 지침 및 권고 회람 문서 승인함(회람문서 번호 추후 발행)
 - 위원회는 각국이 지리적 폴리곤의 유효성을

체크하기 위해 사용하는 GIS 관련 툴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툴을 DDP 서버에 포함시키도록 IMO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함

[LRIT 이행 시기]

□ 논의경과

가. 본회의장(Plenary) 논의 경과

○ LRIT 이행시기 연장요구

- IMO의 기술 및 과금관련 문서발행 지연으로 각국의 DC 구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LRIT 시스템 이행시기 연기(중국)
- LRIT 적기 이행 예정이나 많은 국가들이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많은 선박설비가 적합성시험에 실패하고, EU의 RDC가 '09년 중반에 구축 예정이며 미국은 선박이 LRIT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이행시기 재검토 필요(ICS)
- LRIT 이행 시기 연장에 찬성((파키스탄, 라베리아, 이집트, 칠레,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 LRIT의 적기이행

- LRIT의 적기이행 필요(미국, 일본, 터키 등)
- LRIT 적기 이행이 가능하지만, 초기 이행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안전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아국)

☞ 의장은 '09. 1. 1에 LRIT 전체 시스템이 운영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을 지적하며 LRIT 이행 준비가 된 선박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안을 작업반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함

나. 작업반(WG) 논의경과

- LRIT시스템 구축완료를 위한 임시조치(안) (MSC 85/WP.7/Add.1) 검토

- 협약 미이행국가에 대한 비난을 초래할 것을 우려되는 문구 등은 삭제가 필요하며, 협약이행을 고무하는 더 긍정적인 방안 제시 필요(중국, 사이프러스,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그리스, 터키, 독일, 탄자니아)
 - 다양한 환경, 지역, 국가여건 고려(몰타)
 - 협약 이행국가와 미이행국가 간의 협력 필요, 확실한 deadline 기간이 필요함(인도)
- SOLAS 협약국으로서 당연한 의무사항, 미구축국가를 위해 이런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협약 미이행국가가 이를 요구할 자격이 없음(파나마, 바하마, 마살아일랜드, 라이베리아, 캐나다, 미국)
 - 현재 DC를 구축한 ASP들과 협의해서 기구축된 DC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mini-IDC 검토필요(마살아일랜드, CIRM)
 - 협약에 따라 정상이행을 해온 협약당사국에 대한 혜택은 없음(아국)
- 임시정책의 적용시기
 - '08. 12. 31~'09. 6. 30까지로 투표에 의해 결정됨
 - ※ 협약 미이행국가의 수가 많아서 투표에 의해 정해진 사항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임을 문서에 표기하기 바람(파나마, 바하마)
- 중국, 이란, 남아공, 발바도스 등 4개 국가 및 단체는 '09. 12. 31 요구하였지만 미수용
 - ※ 임시정책을 세운 것 자체가 최대한 양보한 방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율은 않됨
- 임시정책 수용 통보 시기
 - 당사국 정부는 DDP 관련 정보를 '09. 2. 28까지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당사국 정부가 '09. 2. 28까지 테스트 ASP 지정이 가능한지와 테스트 ASP가 선박의 적합성테스트를 마칠 수 있는가?(ICS) →

- 각 국가는 다수의 테스트 ASP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함(바하마)
 - 임시정책이 모든 당사국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임시정책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 당사국정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중국)
 - 중국의 발언에 대해, 협약 이행예정국가들에게는 전혀 이점이 없고 협약 미이행국가들만을 위한 임시정책임을 분명히 함(바하마, 파나마, 미국 등)
- LRIT 시스템의 구축완료를 위한 과도적 조치(ANNEX 8(MSC 85/WP.7/Add.1)) 검토
- 과도기간 연장 : MSC 86차에서 구축상황을 검토하되 과도기간 연장검토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 과도기간 결정 : '08. 12. 31~'09. 6. 30까지로 하고, 중국은 본회의에서 의견 제시하기로 함
 - 협약당사국의 구축현황 공고 : 구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도 공고(네덜란드, 캐나다 지지)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며, PSC 참조를 위하여 '08. 12. 30부터 공고
 - 과도기간중의 전송주기 : 과도기간 동안 정보 전송중단(바하마, 파나마, 라이베리아)의견과 SAR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24시간에 1번은 전송해야 한다(미국, 캐나다)의견이 쟁점화됨
 - 열띤 논의 끝에, 과도기간중의 전송주기는 당사국정부가 결정하도록 함
 - ※ '09. 01. 01부터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LRIT정보 수신계획 발표 : 미국, 호주, 캐나다
- 주요 결정사항
- LRIT 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한 과도기간 협정에 관한 회람 승인함(MSC.1/Circ.[xxxx])

[선박설비의 협약 이행] 논의경과

가. 본회의장(Plenary) 논의 경과

- 선박의 LRIT 정보 전송 요건 준수 날짜가 LRIT 이행 시기를 연장하는 것과 상관 없음
 - 선박은 협약에 따라 LRIT 요건을 준수해야 함
 - 협약에 있는 LRIT 이행 시기를 변경 할 수 없음
- 선박은 이행 준비가 되어 있지만 DC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선박은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함에 동의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

☞ 의장은 작업반에서 동 안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나. 작업반(WG) 논의경과

- 선박이 무선 증서 및 LRIT 적합성 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DC가 준비되지 않아서 항만국 요청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선박은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함에 동의
- ☞ 의장은 성능기준 및 기술사양에 관련규정이 있음을 상기함

 주요 결정사항

- 관련 내용은 LRIT 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한 과도기간 협정에 관한 회람에 포함됨

[LRIT 시스템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논의경과

가. 본회의장(Plenary) 논의 경과

- 협약에 따라 '09. 1. 1 부터 LRIT DC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재정적 안전성 확보 필요
 - '09. 1. 1 부터 LRIT DC를 운영하게 되면, 선박으로부터 정보는 수신하지만 요청하는 국가가 없어서 비용 회수 불가능(바하마, 파나마, 한국)
 - LRIT 적기 이행 국가에 대한 재정적 안정성 방안 강구 필요

☞ 의장은 작업반에서 동 안전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나. 작업반(WG) 논의경과

- 선박은 LRIT 정보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만 구축 또는 지정 DC가 없는 기간을 임시기간(interim period)으로 정하고, 그 동안의 LRIT 이행에 관한 논의
 - ※ 임시기간(interim period)은 6개월 미만이어야 하며, 차기 MSC 회의기간까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제시(사무국)
- 임시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DC 운영을 먼저 시작하는 국가에 대한 비용 회수 방안 강구 필요
 - 파나마, 바하마, 호주등은 전송주기를 24시간, 12시간으로 줄이거나 DC를 구축하지 않은 국가의 해안을 지날 때, 전송하지 말자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 전송주기를 줄이면 통신비용이 올라갈 수 있고, 성능기준에 있는 항만국 및 연안국으로서 LRIT 정보를 요청할 자격에 위배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함
 - 사무국은 적어도 하루에 한번은 LRIT 정보를 전송해야 LRIT 이행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
 - 과도기간중의 전송주기는 6시간 이후로 당사국정부가 결정하도록 함
- 각국의 DC 구축 진행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 LRIT 이행을 위해서는 선박-DC- IDE- DDP 서버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발점은 각 정부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 각 정부는 DDP 관련정보를 IMO에 제출, 적합성시험 ASP 지정, DC 구축, 해당 DC에 선박 등록 등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

- 사무국은 모든 국가가 NDC를 구축할 필요가 없고, 현재 구축한 DC를 일정기간 동안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함
 - 이에, 캐나다, 바하마가 검토 가능함을 시사함

주요 결정사항

- 관련 내용은 LRIT 시스템 구축 완료를 위한 과도기간 협정에 관한 회람에 포함됨

[LRIT Coordinator의 서비스 비용 관련]

논의경과

가. 본회의장(Plenary) 논의 경과

- MSO는 제20차 IMSO 총회 결과 보고서(IMSO)를 바탕으로 LRIT 조정담당자 업무 수행 비용(MSC 85/INF.7) 계획안을 제출
- 아르헨티나는 IMSO의 서비스 비용 정책이 매우 불합리함을 언급하고 페루, 칠레등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비용 정책을 제안함
- 바니아투는 아르헨티나에 동의하며 선박수가 적은 DC가 선박수가 많은 DC와 같은 비용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함
- IMSO는 현 비용산정방식은 임시적 정책이며, 향후 개정임을 제시
 - ☞ 의장은 IMOS가 아르헨티나가 제출한 서비스 비용 정책을 검토하고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

나. 작업반(WG) 논의경과

- IMSO에 성능기준 14.1~14.5항에 명시된 기능 및 의무사항을 수행하도록 의뢰함
- IMSO fund 부족으로 2009년 1/4분기 LRIT 조정담당자 역할 수행 어려움. 최소 20만 파운드 추가 비용 필요. 현재의 DC 갯수로는 감사비용이 DC당 3만 파운드 예상

주요 결정사항

- IMSO에서 차기 특별작업반회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검토기로 함

[LRIT IDC 관련]

논의경과

가. 본회의장(Plenary) 논의 경과

- 의장은 MSC83차에서 IDC 구축이 무산되었지만, 많은 국가들이 IDC 구축을 문의하였음을 언급
- 의장은 작업반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요청함

나. 작업반(WG) 논의경과

-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DC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들은 기 구축된 DC를 사용하는 방안 및 mini-IDE(마셜아일랜드) 사용 가능성이 제기됨

주요 결정사항

- 관련 사항 없음

[가이드라인 개정]

가. LRIT 선박설비의 적합성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지침서(MSC.1/Circ.1257) 개정

논의경과(작업반)

- '09. 1. 1이후 3개월내 적합성시험 완료 문구 삭제
- 적합성시험 결과보고서 개정 : 갱신 전까지는 재발급 불요
 - 무선설비 전회검사일자 항목 삭제
- 적합성시험 보고서의 유효성을 상실하는 경우로서 기존 4가지 외에 적합성시험을 통과하고 적합성시험 보고서를 발급받은 후 장비가 고장이 난 경우를 추가(바하마)
 - 장비고장의 경우, 수리를 완료 후 정상작동하는 경우 기존 보고서를 유효하게 되므로 실익이 없음(사무국)
- SSAS 장비를 LRIT 선박설비로서 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독일)
 - MSC 84차 보고서에서 검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사무국)

○ 개정안 검토

- 4.4 신설 : SSAS 장비를 적합성시험을 통과한 경우, LRIT 장비로 이용할 수 있음
- 5.2, 5.2.1, 5.2.2 신설 : LRIT 선박장비의 적합성시험은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행해야 하며, 현재의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이 A1, A2, A3 지역만 커버 가능하므로 A4 영역 테스트는 어느 지역에서든 할 수 있지만, 선박이 A4에 있을 때 테스트 할 것인지는 주관청이 결정해야 하며, A4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통해 시행해야 함
- 7.1, 7.3 신설 : 적합성 시험 보고서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을 대신해서 적합성 시험을 수행한 ASP에 의해 적합성 시험이 완료됐을 때 발급되어야 하며, LRIT 정보를 수신하기 위해 사용되는 선내장비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적합성 시험 보고서는 무효(신규 장비로 적합성시험 재 실시)

 주요 결정사항(분회의)

- LRIT 선박설비의 적합성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지침서(MSC.1/Circ.xxxx) 개정안을 승인함

나.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위한 지침서(MSC.1/Circ.1258) 개정

 논의경과

- SAR 당국에 대한 LRIT 정보 제공
 - SAR SURPIC 요청은 당국의 SAR 관할 범위와 상관없이 할 수 있음
 - SAR SURPIC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24시간 내에 요구영역내에 있는 정보만 제공함에 따라 최소 1개의 LRIT 정보만을 받을 수 있음
 - 선속 및 침로 등의 정보파악을 위해서는 요구영역을 필요영역보다 넓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 경위도 스키마도, 분(분은 소수점 이하 2자리)으로 하는 것 확인(미국)
- SAR SURPIC(메시지 타입 6) 및 SAR Request(메시지 타입 5)의 무료제공
- SAR Request는 요청국이 지불(EU, 네덜란드)
- 협약에 따라 SAR 서비스는 무료

 주요 결정사항

- 수색 및 구조 서비스를 위한 지침서(MSC.1/Circ.xxxx) 개정안을 승인함

다. LRIT 이행에 관한 지침서(MSC.1/Circ. 1256) 개정

 논의경과

- 항만 및 항만 시설 정보, SAR 당국 정보를 IMO의 GISIS에 갱신해야 함
- 성능기준에 있는 LRIT 관련정보를 IMO에 공식 레터를 통해 전달해야 함
- DDP 서버의 ID 및 비밀번호는 사무국에 의해 당사국정부의 담당자에게 제공됨
- PKI는 DDP를 통해 당사국정부의 담당자에게만 발급될 예정

 주요 결정사항

- LRIT 이행에 관한 지침서(MSC.1/Circ. 1256) 개정안을 승인함

[LRIT 적용 면제 선종 관련]

가. 특수선 및 특수목적선의 LRIT 제도 적용

 논의경과(작업반)

- 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Units(FPSOU) 및 Floating Storage Unit(FSU)
 - 추진기가 없는 국제항해 FPSOU 및 FSU는 LRIT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추진기가 있는 국제항해 FPSOU 및 FSU는 총톤수 300톤 이상일 경우에 LRIT제도 적용-AIS장비를 장착하고 A1 내에서만 운

- 항하는 경우는 제외
 - '08. 12. 31 이전에 건조된 FPSOU 및 FSU는, IV장 조항 적용 제외 대상일 때, '09. 12. 31부터 LRIT 적용
 - FPSOU 및 FSU의 장비관련 증서에 LRIT 정보 전송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LRIT 적합성테스트보고서를 선내에 가지고 있어야 함
 - Offshore Supply Vessels(OSVs)도 위의 요건에 포함시킴
 - Special Purpose Ships(MSC/Ad Hoc LRIT 6/5 3.66~3.69)
 - 국제항해 300GT 미만 특별목적선박은 기국이 요청하면 LRIT 정보 송신해야 함
 - 총톤수 300톤 이상일 경우에 LRIT제도 적용 - AIS장비를 장착하고 A1 내에서만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
 - 적합성테스트보고서를 선내에 가지고 있어야 함
 - 선박톤수측정규정(결의서 A.494(XII))에 따라 협약 4장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
 - AIS장비를 장착하고 A1구역내에서만 운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LRIT제도를 적용하며 적합성시험보고서를 선내에 가지고 있어야 함
 - 지침서(안)에 대한 의견 및 자구수정
 - 6.1.1 ~ 6.1.3 면제 및 동등물 : 자구수정
 - 7.2 위치보고 중단 및 주기 변경시 선박의 조치사항 : ANNEX 5 12.2항 삭제
 - 주요 결정사항
 - LRIT 제도 적용 제외 대상 선종에 관한 지침 회람 승인(MSC.1/Circ.[xxxx])
- 나. LRIT제도 적용면제 및 LRIT정보 전송 중단
- 논의경과(작업반)
 - AIS를 설치한 A1구역운항선박이 타 AI구역

- 으로 운항할 때 LRIT 적용면제
 - SOLAS 제4장의 경우 규칙 3.1 및 3.2.2에 의거 협약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나, 제5장에는 LRIT 적용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바하마)
 -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운항선박에 대하여 SOLAS 제5장 규칙3.2에 따라 LRIT 적용제외를 합의함(아국 발표, 독일 및 일본 지지)
 - 한국의 사례는 각 국의 유사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음(터키, 사이프러스)
 - 다만, 아국과 일본처럼 정부간 협의에 의해 적용 면제하는 경우, IMO에 통보해야 하고 대체장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사이프러스 발언, 미국 지지)
 - LRIT 선박설비의 전원차단 및 LRIT정보 전송중단
 - 수리 또는 장기 계선중일 때는 기국 및 관련당국이 선박의 위치를 알고 있는 조건으로 전원 및 무선설비 전원 차단 가능하며, 선장은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함(사무국)
 - 전송주기를 줄이는 것(매 6시간 매24시간)은 선장은 불가하며 당국에서만 가능함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선박위치를 전송하는 AIS와 달리 LRIT는 지정DC에게만 위치정보를 전송하므로 아덴만과 같이 위험지역에서의 LRIT정보 전송중단은 논의 대상 아님
 - 주요 결정사항
 - LRIT 제도 적용 제외 대상 선종에 관한 지침 회람 승인(MSC.1/Circ.[xxxx])
- [기타사항]
- 가. 영구적 LRIT IDE 구축
- 논의경과(작업반)
 - MSC 84차에서 미국이 '08. 01. 01부터 2년 동안 임시 ID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결의서

MSC.264 (84)를 승인함. 영구적 LRIT ID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방안 논의 필요

- 미국은 임시 IDE를 '08. 1. 1~'09. 12. 31까지 무료 운영예정
- 미국이 '11. 12. 31까지 임시 IDE를 지속할 것을 요구
- MSC 86차에서 영구적 ID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안 공고
- MSC 87차에서 영구적 IDE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출 및 평가
- 주요 결정사항(작업반)
 - 임시 IDE 운영에 관한 MSC 결의안 채택(결의서 번호 미발행)

나. LRIT 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감사

- 논의경과
 - IMSO의 각 DC에 대한 접근권한과 감사자료 제출의 상관성을 명확히 함(아국)
 - 제출하기 위한 데이터의 종류 및 저장 데이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미국)
 - IMSO를 LRIT 조정담당자로 지정하는 MSC 결의안 준비
- 주요 결정사항
 - IMSO에서 차기 특별작업반회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검토기로 함
 - IMSO를 LRIT 조정담당자로 지정하는 MSC 결의안 채택(결의안 번호 미발행)

다. LRIT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계획

- 논의경과(작업반)
 - LRIT 시스템의 중단, 해킹 등 발생시에 대한 대처방안 검토
 - 해킹방지를 위한 시스템접근용 개별 ID 필요(IMSO)
 - 임시 IDE를 24시간 운영하므로 지원가능(미국)
 - 시스템수정 재가동시 수정시간 공고, 롤백

프로세스 등 공식화 필요(오스트레리아)

- IDE, DDP, IMSO, IMO 등을 대처주체로 지정(파나마, 터키)

주요 결정사항

- IMSO에서 차기 특별작업반회의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검토기로 함

라. ASP 관련 사항

논의경과(작업반)

- ASP의 지정을 위한 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가이드스 제정
 - 각 국가별 내규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일본)
 - 아직 지정하지 않은 국가를 위한 가이드스를 만들고자 함(의장)

주요 결정사항(작업반)

- 차기 특별작업반회의에서 검토기로 함

마. 군도국가의 내수면 지정 관련 사항

논의경과

- LRIT 제도와 UNCLOS의 내수면 정의가 달라서 발생하는 LRIT 정보 송신에 대한 이견 발생

주요 결정사항

- 차기 특별작업반회의에서 검토기로 함

바. 도시국가의 DC 구축 관련 사항

논의경과

- 현 LRIT 제도에서는 당사국정부가 LRIT DC를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도시 국가가 DC 구축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함

주요 결정사항

- MSC 86차에서 관련 사항에 관한 성능 기준 개정기로 함(필요 시)

4. 대표단 주요 활동사항

○ Plenary 활동

- 아국은 프로토타입 DC로서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LRIT 적기 이행이 가능하지만, 초

기 이행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안전성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발표

- LRIT 이행활동
 - IDE, DDP와 각 DC의 구축현황 및 계획발표
 - 시 아국 DC 구축현황 및 기능 발표

5. 후속조치사항

- 테스트 ASP 지정 및 선내장비 적합성테스트 이행
- 아국 DC와 타 DC간 LRIT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서(안) 검토
- LRIT Coordinator의 감사 서비스 이용 및 비용부담에 관한 협정서(안) 검토

의제 18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

1. 의제 개요

- 사무총장의 개회사 및 제100/101차 이사회 결과보고서 검토 중 언급된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의 해적문제 관련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 상선의 무기소지 관련 해상보안 작업반(WG 2)에서 검토 후 본회의장에 최종보고
- 2008년 3/4분기까지의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행위에 관한 통계 보고서 검토
- 제25차 총회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예방 및 억제에 관한 IMO 지침」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요청, 통신작업반 구성 논의 중 임시 보고서 제출
- 현재 아시아권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사고 발생시 진행되는 정보공유 절차를 MSC/Circ.622/Rev.1 및 MSC/Circ.623/Rev.3의 부록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함

2.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 IMO 사무국 및 UN 안보리 활동
 - 각 회원국들은 기초연설을 통해 소말리아 인근 해역의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IMO 및 UN

안보리의 노력을 치하함

- UN 안보리 결의서 1816 및 1838 채택을 위한 반기문 UN 사무총장 및 IMO 사무총장의 노고에 감사

- 제6020차 UN 안보리 회의('08. 11. 20)에서 IMO 사무총장은 소말리아 해적 관련 브리핑 실시

- 제6026차 UN 안보리 회의('08. 12. 2)에서 결의서 1846 채택, 해적대응 세력의 소말리아 영해진입을 12개월 연장함

소말리아 인근해역의 군사활동 현황

- NATO 연합군 및 CTF-150 등 다양한 국가의 해군이 아덴만 및 서인도양 해역의 중요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해 활동 중에 있음
 - 소말리아의 광범위한 해안선(약 2,100 마일)을 고려할 때 함정 및 항공기 등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
 - EU에서는 유럽 해군함대(EUNAVF-OR)를 구성(08.11.10), 금년 12월부터 1년간 활동 예정

※ 동 해역에서 활동 중인 영국 해군소속 부사령관이 본회의장에서 현장상황을 소개함

- 효율적인 해적행위 저지활동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과 군사 활동의 UN 또는 적절한 국제포럼을 통한 통합조정 기능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이를 위한 IMO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함

해적체포 및 기소를 위한 법률체계

- 해적 체포 및 기소를 위한 국제적 법률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의 군사 활동이 해적행위의 소극적인 저지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 해적 및 무장강도의 저지, 체포 및 기소 등을 위한 국제적인 법률체계 구축은 물론 연안국 국내법 도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해적소탕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함

※ 항행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방지협약(SUA,

1988) 적용 촉구

해적행위 방지를 위한 지역 협력

- 해적 대응을 위한 인접국간 협정체결 및 이행 가속화
 - 2009년 1월 지부티에서 개최 예정인 「해적 행위 방지를 위한 고위급회의」에서 동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인근 국가간 적극적인 협력 및 관련 국가의 지원 필요성 대두
- 협정체결 후 동지역의 해적대응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를 위한 회의 등 후속 조치의 필요성 공감

해운계의 자구노력 및 선박의 무장

- 해적 및 무장강도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해서는 선박의 속력유지, 견현확보, 조선 등 IMO에서 제안한 대응방안을 따를 것을 권고
 - IMO는 선사 및 선박에서 해적 및 무장강도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지침서(MSC/Circ. 622, MSC/Circ.623 및 결의서 A.922(22))를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작업 진행 중
 - ※ IMO 지침을 따르기 어려운 선박은 위협지역을 회피하는 항로도 고려할 것을 제안
- 보안요원의 승선 또는 선박의 무장 관련 해상 보안 작업반(WG2)에서 검토하도록 요청

해적대응 관련 상선의 무기 소지에 관한 검토

- 대다수의 국가에서 상선의 무기소지 관련 반대의사 표명 및 특히 선원의 무기소지에 반대하며, 비무장 보안요원 고용은 개별회사의 재량임에 공감함
- 무장 보안요원 승선은 IMO에서 논의할 사항 보다는 각 기국의 고유 결정사항이며, 각 기국의 명확한 입장 검토 필요
- 일부 국가에서는 선박의 무기 소지시 해적의 무장 강화 등 위협성 증가에 대한 우려 및 관련 연안국 및 항만국의 입국거부 등 부작용 초래 가능성 언급

해적방지 관련 IMO 지침 개정 종합검토 (통신작업반 운영중)

- 통신작업반 의장(덴마크)은 본회의장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행위 및 무장강도 예방 및 억제에 관한 IMO 지침(MSC/Circ.622/Rev.1, MSC/Circ.623/Rev.3 및 결의서 A.922(22))」의 개정 관련 중간보고 실시
- 현재 통신작업반에서 진행 중인 동 IMO 지침의 재검토 및 갱신시 상기 해적대응 관련 상선무기 소지에 대한 MSC 85 논의결과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 ReCAAP-ISC에서 아시아권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강도 사고 발생시 진행되는 정보공유 절차를 MSC/Circ.6 22/Rev.1 및 MSC/Circ6.23 /Rev.3의 부록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한 것과 관련 통신작업반에서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함

3. 후속 조치사항

- 아국은 서인도양 및 아덴만의 주요 이용국으로서 해적 및 무장강도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해적 및 무장강도 예방 및 퇴치를 위한 IMO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개정안의 개발 및 제출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 이번 회기 중 통신작업반 의장에게 작업반에 추가 참여의사 표명함
- 아울러, 해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 시 도출된 선박의 해적 대응방안을 선박 및 선사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소말리아 연안 항행 아국적 선박의 사설 보안요원 탑승관련, 총기소지 등 무장 관련 사법(법집행) 당국의 법적검토 및 명확한 지침 제정필요